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474호

1974. 12. 17.

#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00 호 :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 3

○ 규 칙

제 1427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 3

제 1428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4

○ 훈 령

제 392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위임전결규정 ..... 16

○ 고 시

제 184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29

제 185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29

제 186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30

제 187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 32

○ 공 고

제 257 호 : 잠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 3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258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 .....	33
제 261 호 : 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기간연기)공람공고 .....	35
제 263 호 : 직인개각공고(영등포구화곡제1동) .....	36
제 266 호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위치변경에 대한 공고 .....	36
◎ 사    병 .....	36
◎ 위    보	
관악구 보건소 청사 이전 .....	37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인

1974. 12. 17

◎ 서울특별시조례 제 900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수강료등) ①사업관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다음각호와 같다.

- 1. 기술교도 수강료
  - 가. 미용과 : 월 1,000 원
  - 나. 양재과 : 월 1,000 원
  - 다. 편물과 : 기계 월 1,000 원  
아후강월 1,000 원
  - 라. 타자과 : 월 1,000 원
  - 마. 수예과 : 월 1,000 원
- 2. 강당사용료 1회 1,000 원
- 3. 직업소개 및 상담무료

②수강료 및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된수강료 및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공부리를 위하여 강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당사용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에서 규정한 수강료는 이 조례 공포이후에 입소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인

1974. 12. 17

◎ 서울특별시규칙 제 1427 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5 조 2 ( 22 특별경비대 ) ① 22 특별

경비대에 본부, 제 1 제대, 제 2 제대 및 제 3 제대를 두고, 본부장은 경비 대장이 겸임하며 제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② 본부 및 제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부

- 가. 경호계획
- 나. 복무 및 인사
- 다. 경리 및 보급
- 라. 직인 관수
- 마. 장리 관리

2. 제대 ( 제 1, 2, 3 제대 동일 )

- 가. 경호경비
- 나. 지방자치도 지원근무
- 다. 기타 특수 경호경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 조폐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용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4. 12. 17

◎ 서울특별시규칙제 1428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 조폐시행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 조폐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제 1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 진료청구 ) ① 시립병원에서 진료불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진찰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 진찰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 개월간으로 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 타시도거주자 ) 서울특별시 주민이 아닌 타시도 거주자에 대하여는 응급환자 및 행여환자를 제외하고는 무료 진료불 할 수 없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 입원허가 및 보증금 ) ①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의 입원허가신청서, 별지 3 호 서식의 입원서약서 및 별지 제 4 호

서식의 지정보증서를 제출하여 병원장의 위가를 맡아야 한다. 다만, 무료환자는 입원 허가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유료환자는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 4 조 중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무료환자의 진료기간) 무료환자에 대한 진료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감면) ① 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가를 감면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면제 대상자 (무료환자)
  - 가. 제 1 중 전염병환자
  - 나. 혈액환자
  - 다. 생활보호대상자

라. 시에서 인가한 사회사업단체의 환자

마. 마약사범

바. 각종 전염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업된 자

사. 중요 행사에 참석하던 공상자  
아. 도시 계획사업 집행으로 인한 피수용자측의 부상자

자. 시에서 적당하는 작업 현장에 종사하던 공상자

차. 파월장병전사자 유가족증명 또는 확인증소지자. 다만, 가족의 범위는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 및 제대로 한다.

카. 구청장 및 읍장소장의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진료요구가 있는 요구호대상자(영세민)로서 시장이 배정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타. 기타 병원장이 특별히 사유가 있다

- 2. 감액 대상자
  - 가. 요구호대상자(영세민) 증명 소지자로서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

동장의 진료요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가 전체금액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나. 기타 병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면제대상자는 무료 병동에 감액대상자는 유료병동 3등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제 2 항중 "사용료 및 수수료"를 "수가"로 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수술구분) 수술의 구분과 종목은 별표와 같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고가약) 고가약이라 함은 아래 열거한 일반 전위소화제류, 일반감기조제약품류 및 일반연고기제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와 일반의용기제류 이외의 약품을 말한다.
1. 일반 전위소화제류  
증조, 디아스타제, 건발, 기마구, 탄마, 스크포리아엑시스, 판토틴아친 비스프스카오링, 탄말빈등
  2. 일반감기 조제약품류  
아스피린, 페나세친, 카페인, 탄마, 항히스타민제, 아미노피린, 설피린 등
  3. 일반연고 기제 및 의용기제류  
와세린, 아연화붕산, 유허등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수 술 구 분 과 종 목

1. 일 반 의 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 술	대소장절제술, 간엽절제술, 위장수술, 담낭 및 담도수술, 위절제술 미주신경절제술 및 그와 동반하는 수술 각종, 악성종양제거술, 갑상선절제술, 유방암근치수술, 급성복막염수술, 기타 특수수술등
중 수 술	농흉, 간농양, 횡경막하농양및기타 심부농양배액술, 중수절제술, 위장관문합술, 장폐쇄교정술, 탈함 및 함문질환수술, 활장교정술, 식파술등
소 수 술	소종양적출술, 소파술, 생검등

2. 흉 관 의 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술	계심술(심폐기사용) 폐전치술술, 늑막외폐절제술, 폐절제술, 박피술, 식도정형술, 심낭절제술, 증격중계지술, 대동맥성형술, 혈관이식수술등
중 수술	흉곽성형술, 맥부분절제술, 말초혈관성형술, 동맥문합술, 승도관막절제술등
소 수술	계흉술, 흉곽삽입술, 심장도자술, 늑골절제술등
3. 신 경 의 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술	개두술: 뇌종양수술, 뇌간수술, 뇌혈관수술, 두개강내혈중 정신외과수술: 두개골 정형수술등 정외과수술: 파킨슨씨병, 분수의운동, 시정파괴술등 전두방절제술: 척수손상추간핵탈출질환 척수농양수술등 요추교감신경 등척출술: 선천적기형정향술, 삼차신경통수술등 두개천공술: 전두엽절제술, 부분적전두방절제술, 척추수술, 말초신경수술등
중 수술	뇌실천자술: 두피혈관수술, 두개골중양, 두개골수입 두개천공술: 뇌장막간활영술등, 경상박뇌혈관활영술, 두동맥포출술 두피손상 또는 중양 삼차신경천자술, 안면신경암수술등

4. 정 형 의 과	
수술구분	종 목
대수술	척추, 고관절, 견갑관절, 슬관절, 주관절, 대퇴 하퇴, 상박전박수족 등의 골절 및 질환 골수 골막염 사지절단(대퇴, 하퇴, 상박, 전박 수족)
중수술	골 절 등
소수술	사지(경미한것) 등
5. 산 부 인 과	
수술구분	종 목
대수술	자궁경부암수술, 질암수술, 외음부암수술, 자궁전착술(자궁체부암 단상외암등) 계왕절개겸 자궁전착술, 부식 및 질식자궁착술, 이중자궁부속기적출술, 자궁부분적출술, 부식 자궁위치교정술, 계왕절개술, 부속기절제(난소낭종) 자궁외 임신수술 난관정형수술등
중수술	질식자궁위치교정술, 단순외음절제, 질벽정형술, 진구섬음점형술, 경관정형술, 부식및질식단관절찰, 이상분만, 시력적개부등
소수술	(시립적개부) Bortholin 선농양절개, 자궁경소작술, 태회성치녀막절개술, 인공유산등
위래수술	소파수술, 전기소작술(자궁, 경부) 난관통기검사, 질확대경검사, 다구라스씨 낭천자술등



6. 비 노 가 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 술	신척출술, 신부분척출술, 부신수술, 노관장문합술, 노관외부이식술, 노관절석술, 방광척출술, 전립선척출술, 정낭수술, 음경압근치술, 고관압근회술, 신결석술, 신우결석술, 신우관성형술, 노관방광이식술, 노도성형술, 경노도전립선절제술, 신척출술, 노관장문합술, 노관절석술, 방광각종수술, 전립선척출술, 고관척출술, 정관부고관문합술, 음경절제술, 신결석술, 신유조동술, 부분지방광절제술, 경노도각종수술, 노도성형술등
중 수 술	방광루조발술, 음낭수종수술, 부고관척출술, 정관절제술, 경노도직전기응고술등
소 수 술	정관절제술, 포경수술, 노도절석술, 전기응고술, 외노도구수술등
7. 안 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 술	강막수술, 각막이식술, 백내장수술
8. 이 비 인 후 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 술	고막성형술, 비성형술, 편도선척출술, 비중격교정술등
중 수 술	편도절제술, 기관절제술, 경구후두수술, 비골절점복술, 내시경검사 비순교정술, 식도및기관내이물질출술, 후두조직절제검사등
소 수 술	아미노이드절제술, 비이적출술, 내시경검사, 비안구강조직절제검사등

별지제 1 호서식

진찰권 ( 앞면 )

과제

성명	세	성별	남	여
주소	서울시	구	동로	가
발급월일	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 병원장				

( 뒷면 )

주의사항

1. 본권은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2. 본권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3. 본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6개월간입니다.

<별지제 2호서식>

입원허가신청서

본 적

주 소 통 반 (전화 )

환자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당 세) 성별 남 여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귀원에 입원코자 입원서약서와 연대보증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허가하되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립병원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임원서약서

1. 본인은 위원회 모든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원회 수술, 검사, 기타 일체 지시에 순응하고 그로 인한 여하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위원회 지시에 따라 임, 퇴원 기일을 엄수하겠습니다.
4.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건은 일체 연대보증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임원가료중 불행히 사망하였을 경우 병리해부와 기타 필요한 검사 및 의료상 연구를 위한 조직일부를 채취하여도 하등 이의가 없도록 본인 보증인 연서하여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환자 본인

(인)

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제 4호서식>

제 정 보 종 식

본 작

주 소

환자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생 성별 남 여

상기 환자가 귀원에 입원함에 있어 수가의 남부는 물론  
병원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지체 없이 변상할 것을 연대 보증합니다

19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동 반

성 명

(인)

직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환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전화

거주지

전화

연대보증인

주 소

동 반

성 명

(인)

직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환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전화

거주지

전화

서울특별시립병원장 귀하

<별지제 5 호서식>

○ ○ 구 ( 출 장 소 )

분류기호

197

수 신 시립병원장

제 목 요구호 대상 ( 영세민 ) 환자 진료 의뢰 ( 무료 )

1. 당구 관내 다음 요구호대상 ( 영세민 ) 환자분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수가조례 시행규칙 제 6 조제 1 호 " 카 " 목의 규정에 의거 귀병  
원에 의뢰하오니 무료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 인적 사항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첨 부 요구호 대상자 증명 1 부.

끝.

○ ○ 구 청 장 ( 출 장 소 장 )

별지 제 6 호 서식

○ ○ 동

분류기호

197

수 신 시립병원장

제 목 요구호대상 (영세민) 환자진료의뢰 (감액대상자)

1. 당동 관내 다음 요구호대상 (영세민) 환자를 서울특별시립 병원수가 조례시행규칙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의뢰하오니 진료 조치하시고 수가불 감액 ( 50 % 이내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첨부 요구호대상자증명 1부 끝.

○ ○ 동 장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위임전결 규  
정용 다음과 같이 공포하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4.12.12

후 령

① 서울특별시 후령제 392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위임전결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서울특별  
시 지하철본부에 관한 시장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시장  
지하철본부장 ( 이하 " 본부장 " 이라  
한다 ) 지하철본부의 각담당관 ( 이하  
담당관이라 한다 ) 과과장 및 제장  
( 현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에게 전결하게 하여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육 기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 ) 시장, 부시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및 제장의 전결사항  
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사용용 계의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 전결방법 ) ① 부시장, 본부장  
담당관, 과과장 및 제장은 그 소  
관사무에 관한 이 규정의 결재사  
항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의 규정  
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  
한 사항은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  
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된 결재구분에  
의한 이미 결재된 사항으로서 이  
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  
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 협조 ) 전결사항중 다른과와  
관련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협조과의 공통되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 결재위반여부확인 ) 문서통계  
관은 별표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



제외부와 협조부서의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1. 각과공통사항

계별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명	결 계 권 자				합 조 처
			계 장	과 장	본 부 장	시 장	
각 과 공 통	1. 복부	1. 출장명령					
		(1) 담당관이상의 관외					○ 관외과
		(2) 담당관, 과장의 관내			○		
		(3) 과장의 관외				○	·
		(4) 제장이하의 관내	○				
		(5) 제장이하의 관외			○		·
		(6)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	·
		2. 출장복역서 처리					
		(1) 담당관 이상				○	
		(2) 과장이하 (현업포함)			○		
		3. 휴가, 조퇴, 의출의 허가 및 복근명령					
		(1) 본부장의 휴가				○	
		(2) 담당관의 휴가				○	
		(3) 과장이하 직원의 휴가				○	·
		(4) 과장의 조퇴, 의출, 복근명령				○	
		(5) 과직원현업소장의 조퇴, 의출, 복근명령		○			
		(6) 과직원의 일일 당직			○		
(7) 현업기관의 일일 당직		○					

계별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참조처
			계장	과장	담당관	본부장	부시장	
각과공통	2. 기획	1. 기본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변경 2. 심사분석 자료 제출 3.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 (부내왕복문서) 4. 기타 검미한 자료제출 (부내왕복문서) 5.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	
	3. 예산	1. 예산편성 자료 2. 예산배정 요구 3. 공사집행, 물품 및 부동산매매 (1) 1건당 1,500만원 이상 (2) 1건당 1,500만원 미만 4. 물건매매, 노력의 공급 및 운반 5. 물건임대차 6. 재산 폐기 처분 7. 보상업무 (1) 보상업무 및 종합계획 및 1,500만원이상의 보상금 지급 (2) 1,500만원미만의 보상금 지급 (3) 100만원이하의 보상금 지급 8. 세수수료지출	○	○			○	관리과 경리과

제 별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명	결 제 권 자					업 조 처
			계 장	과 장	담 당 관	본 부 장	부 시 장	
각 과 공 통		9. 재산의 임대차 및 임대료 결정				○		
		10. 봉급, 잠급, 여비, 동공요금, 계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 무적 경비의 집행품의	○					
		11.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					
		12. 물품의 반납		○				
		13. 물품의 청구와 수리	○					
		14. 시 의견과 사용허가		○				
		15. 소속금품 출납 명령		○				
		16. 실제범위내의 인부고용		○				
		17.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				
		18. 도급공사의 기성부분의 준공검사		○				
		19. 예산 제배정요구		○				
		20. 공사하자 보수명령		○				
		21. 공사은 자재 공차사용 및 공대 승인					○	
		22.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					○	
		23. 도급공사의 증지해제결정 및 기공					○	



2. 관 타 과		세 부 사 업 명	결 제 권 자					원 조 치
계 별	단 위 사 업		계 장	부 장	담 당 관	본 부 장	부 시 장	
서 무 계		1. 청중단속 및 청사내외 경비		○				
		2. 당직근무명령		○				
		3. 상황실관리 및 회의실관리		○				
		4. 회의운영		○				
		5. 보안관리				○		
		6. 차량 관리		○				
		7. 광열의 관리	○					
		8. 문서통제 및 분류	○					
인 사 계	연금 사무	1. 공무원 연금관계 국인, 연금카드 송부 및 의뢰 2. 기보금 불입내역서 제출 3. 연금부담금 불입		○				
	복무	1. 4급이하 공무원의 혼제 및 그 이하의 조치 2. 고용원, 임시직 공무원에 대한 연 직 감급 조치				○		
	포복 증명 발급	1. 소속공무원 해의파견자 추천 1. 공무원증 기타 재증명 발행 및 인사기록서류 이송		○		○		

계별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명	결 제 권 자					협조처	
			재 장	과 장	담 당 관	본 부 장	부 시 장		시 장
기 획 예 산 제	기획 예산	1. 기획업무의 종합조정 및 사업우선 순위 결정 2.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제출 3. 예산 역입						○	
	의자 업무	1. 차관 및 기체에 관한 사항 2. 원리금 상환						○	
	예산 배정	1. 예산 배정 2. 예산 합의		○				○	

3. 경 리 과

계별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명	결 제 권 자					협조처	
			재 장	과 장	담 당 관	본 부 장	부 시 장		시 장
경리 제		1. 채무과정에 관한 사항 협의 2. 전도자금 지출에 관한 합의		○					
	조달 제	1. 확정 또는 미확정 채권의 양도 승인		○					
관계 제		1. 물품, 출납 보관		○					
		2. 참고운영		○					
		3. 복제 및 피부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4. 회전자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운 수 과								
계 별	단 위 사 업	세 요 사 업 명	실 제 권 자					업 조 차
			제 장	과 장	담 당 관	본 부 장	부 서 장	
운 수 계	영업 사항	1. 구내 영업 허가 2. 광고 영업 허가 3. 현업종사원 수시 교양 4. 현업 종사원 교육훈련				○		
	운임	1. 단 체 적 계 승 인 2. 임시 열차 설정 3. 동 차 증 결	○		○			
심 사 계	승차권 심사	1. 여객 운수 수입 및 환불 심사 2. 분 용 승 차 권 의 세 기 3. 회 수 승 차 권 의 심 사 4. 실 지 심 사 5. 보 고 장 표 류 의 심 사	○	○	○	○		
운 전 계		1. 타 운 수 기 관 과 의 업 정 동 의 체 결 2. 열 차 편 성 계획 3. 타 운 수 기 관 과 의 운 전 위 급 에 관 한 조사			○		○	

5. 공 무 과

계 별	단 위 사업	세 부 사 업 명	결 제 권 자					업 조 치
			제 과 장	담 당 관	본 부 장	부 시 장	시 장	
보 선 제	1. 계 획	1. 보선작업 계획 및 실적			○			
		2. 궤도보수공사 시행방침 결정			○			
		3. 궤도개량계획 방침 결정			○			
	2. 공 사 시 행	4. 보선기계운영 계획방침 결정	○					
		5. 자갈실배조사 및 보충계획 (수송계획) 결정			○			
		6. 선로 및 전조물 (건축물제외) 의 보수공사의 선제 및 조사 결정			○			
	3. 기타	1. 공사용품의 준비 및 운영	○					
		2. 공사설계의 심사 및 준공공 조사 보고	○					
		3. 선로차단공사 시행 및 결정			○			
		2. 운전사고 및 선로재해처리방침			○			
		3. 선로검사 및 검차			○			



계 별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명	결 계 권 자					합 조 처		
			계 장	과 장	담당관	본부장	부시장		시장	
		4. 궤도 재료 운영 사항 5. 선로 및 시설물의 도표류 관리 수정 사항 6. 궤도 재료 훼손 사항		○						
건 축 계	1. 계 회수 팀	1. 건축물의 공사설계 2. 급수시설의 공사설계 심사 및 준공조사 보고 3. 공사 및 보수용품의 준비 및 운용 4. 건축물 및 급수설비의 보수 및 관리계획		○						



7. 전 차 과									
계 별	단 위 업	세 부 사 업 명	결 제 권 자					업 조 처	
			계 장	과 장	담 당 관	본 부 장	부 서 장		서 장
전 차 계		1. 전차의 규격 제조 2. 전차부속품 수급 계획 3. 사업소 지도 감독 4. 각종 제원의 동지 기획					○		
검 수 계		1. 전차 검수에 관한 계획 및 각종 보고 2. 전차교장 보고(경미사항) 3. 전차교장 보고(운휴 관련 사항) 4. 전차 운영 실적 보고					○		

8. 전 기 과									
계 별	단 사 위 업	세 부 사 업 명	결 계 권 자						
			계 장	과 장	담당 관	본부 장	부시 장	시 장	협 조 처
각 계 공 통		1. 제시설 기능유지 검사에 관한 사항				○			
		(1) 변송전 선로검사				○			
		(2) 고저압 배전선로 검사				○			
		(3) 급전선로 검사				○			
		(4) 강체선로 검사				○			
		(5) 선착선로검사				○			
		(6) 배전실 설비 검사				○			
		(7) 역전물 전기 설비 검사				○			
		2. 제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항				○			
		3. 제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관한 사항				○			
		4. 제시설 기능유지 점검에 관한 사항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84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 1971.4.7 )

로 일부변경결정 고시된 서울특별  
시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법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 승인조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외곽에서 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 1. 도면상략

2. 지적승인조서

( 도면포사와 같음 )

1974.12.11

서울특별시장

단위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준공업지역	서대문구성산동, 수색동, 상암동 일부지역	3,492,000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85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 71.4.7 )

로 일부변경결정고시된 준공업지역  
( 영등포구 시흥동, 가리봉동, 독산동

영등동, 문래동, 영등포동), 상업지  
역 ( 영등포구 영등포동 2, 3, 4 가  
시흥동 일부지역 ) 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의 규정에

<p>익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p>	<p>첨부 1.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도면표시와 같음)</p> <p>2. 지적고시도면 (도면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1974.12.13</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적 (㎡)	비 고
준공업지역	영등포구 시흥동, 가리항동, 독산동, 영등포동, 양평동, 문래동 일부 지역	16,742,970	
상업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2,3,4 가, 일부지역	140,266	
상업지역	영등포구 시흥동 일부지역	32,731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p>◎서울특별시 고시 제 18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 1971.4.7 ) 로 일부변경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p>	<p>국 도시계획과와 각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첨부 1. 도면생략</p> <p>2. 지적승인조서 (도면표시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1974.12.1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사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상업지역	관악구 신흥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255번지 일대지역	241,338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	서대문구 불광동, 갈현동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지역	53,650	·
·	성동구 천호동 397번지일대 구획정리사업지구 성내동 25번지일대 일부지역	501,339	구획정리사 업지구내일부
·	서대문구 역촌동, 용암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지역	330,735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	동대문구 망우동, 망우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98,550	·
·	서대문구 대현동, 북아현동, 노고산동, 창천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225,385	·
준공업지역	도봉구 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530,804	·
·	성동구 성수동 1가, 2가 일부지역	1,970,500	·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각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제 18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물고가. 시설(학교)조서

시하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2. 16

서울특별시청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학 교	도봉구중계동 452 부근	11,000 ㎡	중계국교

별첨도면표시와감육(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도봉구청에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57 호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1.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건설부공고제 125 호(74.12.6)로 사업시행인가 되었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 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본공고는 시보및 일간신문 2개사에 게재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겠으나, 개별통지불 수령하지 못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관리 제 2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74.12.6-78.12.31)

가. 사업명: 서울특별시 잠실지구

마. 지시사항: 생략

토지구획정리사업

1974.12.11

나. 시행지구: 성동구 잠실동, 신천동,

서울특별시장

송파동, 전지역 삼성동,

◎서울특별시공고제 258호

삼전동, 석촌동, 기락동,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

이동, 방이동, 봉납동, 둔

시험실시공고

촌동, 성내동, 각일부지역

75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

다. 시행면적: 3,395,000평

시험의 시행일자등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제 공고한다.

(세척면적 20,126평)

1974.12.12

라. 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4개년

서울특별시장

1. 시험구분

면허종별	시행일자	장소
2종보통	1월 7일, 3월 13일, 5월 8일, 7월 10일, 9월 11일 11월 13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한남동)
1종대형	1월 6일, 3월 19일, 5월 21일, 7월 16일, 9월 17일, 11월 19일	·
1종특수	2월 6일, 4월 3일, 6월 5일, 8월 7일, 10월 2일, 12월 4일	·
1종보통	2월 11일, 4월 8일, 6월 10일, 8월 12일, 10월 14일, 12월 9일	·
1종특수	2월 19일, 4월 16일, 6월 18일, 8월 20일, 10월 16일, 12월 17일	·
원동기	매주 금요일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 가. 특별시험실시일자 10 일전부터  
시험일자전일 12:00 까지 접수마감
- 나. 접수마감일 및 시험일자가 공휴일  
인 경우는 하루 앞당겨 실시한다.

3. 시험과목

- 가. 필기시험 : 교통관계법령 1 과목 구  
조 및 취급방법 1 과목
- 나. 운전적성시험 : 신체검사 및 시각반  
응 검사
- 다. 기능시험 : 코-스장거리

4. 응시자격

- 가. 도로교통법 제 57 조 ( 면허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 1) 제 1 종 대형 면허는 만 25 세 이상  
의 자로서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 2)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응시자는 만 16 세 이상인 자
  - 3) 기타 면허 응시자는 만 18 세  
이상인 자
- 나. 응시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법  
제 17 조의 7 의 규정에 의한 서울  
특별시내 거주자에 한한다.

5.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 통 ( 응시원서 뒷면  
신체검사서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병원 ( 국립경찰병원 )  
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주민등록표의 초본 1 통 ( 주민동  
록증을 제시하였을 경우는 예외  
로함 ) ※ 주민등록지참시대조 확인
  - 다. 도로교통법 제 5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시험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그에 따른 증  
명서 1 통
  - 라. 사진 5 매 ( 최근 6 개월 내에 촬  
영한 상반신소명합판 3.5X4.5 )
  - 마. 제 1 종 대형 면허 시험 응시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각 시도지사발  
행의 3 년 이상 경력증명서 1 통
  - 바. 수수료 600 원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200 원 )
6. 원서 배부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경찰국 교통과 면허계  
( 용산구 한남동 소재 )
7. 기타 사항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경  
찰국 면허계 ( 54-6719, 54-672 )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261 호

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  
(기간연기) 공람 공고

1. 건설부공고 제 7 호 ( 72.2.19 )  
및 제 105 호 ( 69.10.1 ) 에 의  
하여 사업시행인가한 홍남, 중곡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31 조 및 제 2 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 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 및 홍남, 중곡조합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통지는 따로 하지 아니하  
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4.12.13

서울특별시 장

지구명	연기할면적	준공예정일	연기준공일	비 고
홍 남	168,231 평	74. 12. 30	75. 12. 30	1 년
중 곡	949,340.30	.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263 호

직 인 개 각 공 고

영동포구화곡제 1 동자의 직인이 마  
멸되어 개각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74. 12. .

서울특별시 장

1. 공인명 : 화곡제 1 동 직인

2. 서체규격 : 한글전서체 2.1 선치  
미터정방형

3. 사용개시일 : 75.1.1

4. 공인인명 :

구 직 인

신 직 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266 호

서울특별시관악구청  
위치변경에대한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공  
고 한다.

다 음

종전위치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7 의 187 호

변경위치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399 의 2 호

변경일자 : 74.12.12

1974.12.12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사 명

◎ 1974.12.14

용 산 구 지방행정 이 지 순  
공원과 ( 낙성대 ) 파견근무물  
명합 ( 74.12.14-75.6.15 )

◎ 1974.12.18

주택건설과 지방전기 사 경 영 호

직위해제사유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3 호로 변경함.

◎ 1974.12.18

공 업 과 지방화공 사 정 동 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0.25 ( 발령제  
880 호 ) 견책처분유 동일  
자로 취소함.

도 봉 구 지방토목 사 김 창 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소  
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  
라 74.10.25 ( 발령제  
880 호 ) 감봉1월처분유  
동일자로 취소함.

◎ 1974.12.20

순 천 동림 행정주사 임 중 산  
전문학교

서울특별시 전입유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1 호봉유 급함.

마포구근무물 명함.

◎ 1974.12.20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임함. 김 덕 순

1호봉을 급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1974.12.20  
 안 병 남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강 석 민

지방전기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미아리보조수원지 사무소  
 근무를 명함.  
 김 영 태  
 지방전기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분광동보조수원지 사무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회 보

같이 이전하였기 알려드립니다.

관악구보건소청사이전

1974. 12 .17

관악구보건소 청사불 다음과

관악구보건소장

다 음

보건소명칭	전 소 적 지	이 전 장 소	이전일자	변경된전화
관악구보건소	영등포구시흥동 118-90	관악구상도동 187-1	74.12.16	67 - 0601 67 - 0602 67 - 0603 67 - 0604